



제426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관리 근거 마련〉
■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315호)

2025. 6.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민형배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5. 1.
3. 회부연월일 : 2025. 5.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한 대학 환경 조성을 위해 교지(校地) 내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전동 킥보드, 전동 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이용이 활발합니다. 편의성이 높고 환경보호에도 일조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안전사고 발생 역시 급증하는 등 명암이 뚜렷합니다. 일례로 지난 2020년에는 대학 내에서 킥보드를 타던 학생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이용자·보행자 등 모두의 안전한 이동 보장을 위한 규제 여론이 높습니다.

「도로교통법」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와 기본 안전의무 법제화 장치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대학교 내 도로 등 학내 통행은 여전히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각 대학은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지침을 시행중이지만, 법률의 명시적인 근거 부재로 실효성이 불확실합니다.

이에 각 대학의 장이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이용자 준수사항 등

안전지침을 마련·시행하도록 법제화하고자 합니다. 이용자에게는 안전지침의 준수, 사업자에게는 안전 조치의 규율, 대학의 장에게는 안전관리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대학 교지 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0조의5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교육시설의 장이 대학 내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지침을 마련·시행하도록 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에 대한 지침준수 및 사업자에 대한 지침준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지침 위반자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0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u>제10조의5(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관리) ① 교육시설의 장(「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학교 내에서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개인형 이동장치”라 한다)의 이용자 준수사항, 거치구역, 충전방법, 견인·보관 및 비용 징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u> <u>②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제1항에 따른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개인형 이동장치 사업자는 이용자가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u> <u>③ 교육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을 위반한 자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u>

최근 전동 킥보드, 전동 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¹⁾ 이용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역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최근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897건(사망자 10명), 2021년 1,735건(사망자 19명), 2022년 2,386건(사망자 26명), 2023년 2,389(사망자 24명), 2024년 2,232건(사망자 23명)에 이르고 있는바, 5년간 사고건 수는 약 2.5배, 사망자 수는 약 2.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 최근 5년간 전체 PM 교통사고 현황(2020~2024년) >

기준년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사고건수	897	1,735	2,386	2,389	2,232
사망(명)	10	19	26	24	23
부상(명)	985	1,901	2,684	2,622	2,486

(자료: 교육부,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1)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 나. 그 밖에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은 제외한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법 제2조제19호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

1. 전동킥보드
2. 전동이륜평행차
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는 사고 발생 시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신체가 충격에 직접 노출되어 경미한 사고라도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수칙을 지키며 운전하는 것이 필수적인바, 「도로교통법」²⁾, 지방자치단체 조례³⁾ 등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있음.

한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에 따라 대학 내에서도 관련 사고와 부상자가 발생하고 있어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학 내 환경 조성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2020년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⁵⁾을 마련하고 각 대학이 교육부가 제시한 규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대학별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한 바 있음.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학(‘25.5월말 기준, 39개교 중 31개교 응답) 캠퍼스 50곳 중 43곳에서 자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

2) 「도로교통법」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근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에 필요한 수칙으로서 어린이탑승금지(제11조), 무면허운전금지(제43조), 승차정원초과금지 및 보호장구 착용의무(제50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

3) 「경기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등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한 교통환경 마련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교육부가 파악한 최근 5년간 국립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현황은 충남대(2건), 전남대(22건), 부산대(9건), 강원대(12건), 경북대(37건), 충북대(2건), 한국체육대(1건), 서울과학기술대(2건), 서울대(7건)인 것으로 나타남.

<국립대학교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현황> 9페이지 참고.

5) 교육부 보도자료,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 마련”, 2020.12.18

하여 시행 중에 있으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필요한 안전시설물(전용 거치구역,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로 및 공용충전시설 등) 설치는 여전히 부족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⁶⁾.

이에 개정안은 교육시설의 장이 대학 내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준수사항, 거치구역, 충전방법, 견인·보관 등 이용안전 지침을 마련·시행하도록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지침준수의무 및 사업자의 지침준수에 필요한 조치의무를 부여하며, 지침 위반자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고 사고예방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됨.

다만 개정안은 현행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에서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관리’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인데,

교육시설법은 교육시설(학교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의 규정을 목적으로 하여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⁷⁾하고 있음.

6) 국립대학 캠퍼스 50곳 중 17곳은 전용 거치구역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48곳은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로를, 46곳은 공용충전 시설을 설치하지 않음.

<국립대학교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현황> 9페이지 참고.

7)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시설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에

동 기준이 규율하는 사항이 교육시설의 내진 설계 등 구조 안전, 화재 안전,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 감염예방, 환경 및 재료 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준 등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바, 교육시설이 아닌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이용자 준수 사항, 거치구역, 충전방법, 견인·보관 등 이용안전지침 사항을 교육시설 법에 규정하는 것이 교육시설법 취지 및 법률체계 상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참고로 「고등교육법」에서 학교의 장에게 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 사고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8),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의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제10조(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이하 “안전·유지관리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를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교육시설의 내진 설계 및 내진 보강 등 구조 안전에 관한 기준
2. 교육시설의 화재 안전에 관한 기준
3. 교육시설의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준
4. 교육시설의 감염예방, 환경 및 재료 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준
5. 그 밖에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 ⑤ (생략)

8) 「고등교육법」

제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학교 안전관리의 목표와 기본방향
- 1의2. 입학식·졸업식, 학교 축제 등 학생 및 교직원 다수가 운집하는 행사로서 학교가 주최하거나 학생 또는 교직원이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개최하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기본방향
2. 각종 위험에 대한 예방활동 및 관리
3. 학교의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운영
4. 안전에 관한 인식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을 포함한다)
5. 각종 위험 발생 후 사후조치 및 재발방지책 마련

동 안전관리계획에는 학교 안전관리의 목표와 기본방향, 각종 위험에 대한 예방활동 및 관리, 학교주최행사 안전관리 기본방향,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바, 대학별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교육부는 교내 통행로 등 단지내도로에서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에 관한 법규 부재로 규정 도입 필요성에 동감하나, 「교육시설법」은 학교 등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등 규정을 목적으로 하므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 6788-5185

-
- 6. 각종 위험 예방을 위한 교내·외 협력체계 구축
 - 7. 안전사고 피해자 보상 및 지원
 - 7의2.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한 학생,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지원
 - 8.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그 밖에 학교의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자료)

<국립대학교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현황>

(기준 : 2025. 5월말)

구분			개인형 이동장치 자체규정 마련 여부	개인형 이동장치의 학내 운행제한 여부	전용 거처구역 설치 여부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로 설치 여부	공용 충전시설 설치여부	최근 3년간 개인 이동장치 안전 이용 관련 교육 여부		공유형 이동장치 관련 속도제한 여부	최근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현황	
번호	대학명	캠퍼스명						실시 여부	실적(횟수)		사고 현황(건)	처리 규정 및 주후 절차 마련 여부
1	서울교육대학교	-	○	○	○	X	X	X	0	X	0	X
2	부산교육대학교	-	○	X	○	X	X	○	6	20	0	○
3	경인교육대학교	인천캠퍼스	○	X	X	X	○	○	0	X	0	X
		경기캠퍼스	○	X	X	X	○	○	0	X	0	X
4	춘천교육대학교	-	○	X	○	X	X	X	0	25	0	○
5	청주교육대학교	-	○	○	X	X	X	○	1	25	0	X
6	공주교육대학교	-	○	X	X	X	X	○	2	25	0	○
7	대구교육대학교	-	○	○	○	X	○	○	2	20	0	○
8	진주교육대학교	-	○	○	○	X	X	○	1	20	0	○
9	충남대학교	대덕캠퍼스	○	○	○	X	X	○	7	20	2	○
		보운캠퍼스	○	○	○	X	X	○				
10	전북대학교	전주캠퍼스	○	X	○	X	X	X	6	20	0	X
		익산캠퍼스	○	X	○	X	X	X	6	20	0	X
11	전남대학교	광주캠퍼스	○	X	○	○	X	○	11	25	21	○
		여수캠퍼스	○	X	○	○	X	○	3	25	1	○
12	부산대학교	부산캠퍼스	○	X	○	X	X	○	6	20	9	○
13	강원대	춘천캠퍼스	○	X	○	X	X	○	8	20	12	X
		삼척캠퍼스	○	X	○	X	X	○	16	20	0	X
14	경북대학교	대구캠퍼스	○	○	○	X	X	○	연간 1회	20	37	○
		상주캠퍼스	○	○	○	X	X	○	학기별 실시	20	0	○
15	충북대학교	개신캠퍼스	○	X	○	X	X	○	3	20	2	X
		오송캠퍼스	○	X	○	X	X	X	0	X	0	X
		오창캠퍼스	○	X	X	X	X	X	0	X	0	X
		세종캠퍼스	○	X	X	X	X	X	0	X	0	X
16	경상국립대학교	가좌캠퍼스	○	○	○	X	X	○	4	20	0	○

구분			개인형 이동장치 자체규정 마련 여부	개인형 이동장치의 학내 운행제한 여부	전용 거처구역 설치 여부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로 설치 여부	공용 충전시설 설치여부	최근 3년간 개인 이동장치 안전 이용 관련 교육 여부		공유형 이동장치 관련 속도제한 여부	최근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현황	
번호	대학명	캠퍼스명						실시 여부	실적(횟수)		사고 현황(건)	처리 규정 및 추후 절차 마련 여부
17	제주대학교	아라캠퍼스	O	X	O	X	X	O	1	20	0	X
		사라캠퍼스	X	X	O	X	X	X	0	X	0	X
18	한국교원대학교	-	O	X	O	X	X	O	6	20	0	O
19	국립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X	X	O	X	X	X	0	30	0	O
		용당캠퍼스	X	X	X	X	X	X	0	30	0	O
20	국립목포대학교	도림캠퍼스	O	X	X	X	X	O	5	20	0	X
		목포캠퍼스	O	X	X	X	X	X	0	20	0	X
		남악캠퍼스	O	X	X	X	X	X	0	20	0	X
		신해양산업단지캠퍼스	O	X	X	X	X	X	0	20	0	X
21	국립공주대학교	신관캠퍼스	O	O	O	X	X	O	4	20	0	O
22	국립경국대학교	안동캠퍼스	O	X	O	X	X	O	3	25	0	X
		예천캠퍼스	O	X	O	X	X	O	1	25	0	X
23	국립군산대학교	-	O	X	O	X	X	O	3	25	0	X
24	국립순천대학교	-	O	X	O	X	X	O	1	20	0	O
25	한국체육대학교	-	X	O	X	X	X	O	4	X	1	O
26	국립목포해양대학교	-	X	X	X	X	X	O	5	X	0	O
27	국립금오공과대학교	-	X	X	O	X	O	O	2	X	0	X
28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X	X	X	X	X	X	0	X	0	X
29	국립한밭대학교	-	O	X	O	X	X	O	3	O	0	O
30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O	X	O	X	X	O	1	20	2	O
31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O	X	O	X	X	O	3	25	7	O
		연건캠퍼스	O	X	X	X	X	O	3	25	0	O
		평창캠퍼스	O	X	X	X	X	O	3	25	0	O
		시흥캠퍼스	O	X	X	X	X	O	3	25	0	O
		수원캠퍼스	O	X	O	X	X	O	3	25	0	O